

[별표 1]

심사원 윤리강령(제7조 관련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강령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(이하 "강령"이라 한다)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강령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준수의무와 책임)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제2장 기본 강령

제4조(윤리관 확립) ①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원은 지정심사, 유지관리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) ①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·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(이하 "금품 등"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

② 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,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조달품질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알선 청탁 등 금지)**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7조(업무의 성실처리)**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업무기밀 유지)**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9조(임무완수 등)**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팀장의 지시에 따르며, 심사팀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.